

● 제324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 
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4. 6. 1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김춘곤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1823

### I. 개정안 개요

##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가. 제출자 : 김춘곤 의원 (찬성17명)

나. 제출일 : 2024. 5. 27.

다. 회부일 : 2024. 5. 30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시행을 위한  
재원조달 및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
과 경력단절예방법」 개정안이 2024.3.26. 공포된바 조례에 개  
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 
단절을 예방하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
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함.(안 제4  
조제2항제3의2호)

(2)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4조제2항제4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나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### 1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<sup>1)</sup>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임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‘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’ 마련과 ‘교육 및 홍보’를 추가하려는 것임.

### 2 개정안의 검토사항

- 본 개정안은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함. 또한 부칙에서 시행일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고 있음. 자세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.

<sup>1)</sup>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
(2024년 3월 26일)

◎ **법률 제20418호.**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

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

**부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**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** 다만,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생략)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  <u>&lt;신설&gt;</u>  4. (생략) ③ (생략)	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</u> <u>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- 본 조례안의 상위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,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<sup>2)</sup>.

<sup>2)</sup>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5조(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  
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
 1.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 
 2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 
 3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

- 더불어 제3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<sup>3)</sup>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①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, ②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, ③다변화되는 일 방식·영역 대응, ④돌봄 지원체계 강화, ⑤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의 5개 영역과, 13개 중점과제, 102개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있음.
- 이에 개정안은 시행계획에 ‘지원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’과 ‘교육 및 홍보’를 명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이며 상위법과 법령의 체계화를 갖추고 있어 타당해 보임.
- 특히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3조<sup>4)</sup>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

4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때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3) 참고: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(2020~2024)

4)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하고 있으며,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에서 명시하는 지원확대와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- 서울시 집행부서의 의견도 상위법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수용의 입장임.